



## 연구용기자재운영관리 규정

제정일	1999. 5.25
개정일	2014. 1. 1
개정차수	3차
담당부서	연구지원센터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지원센터 연구용기자재 및 연구재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지원센터의 모든 연구용기자재 및 연구에 소요되는 재료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 제 3조 (관리자의 지정) 연구지원센터의 연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자를 임명 운영한다.
1. 총괄책임자 - 연구지원센터장 (개정 2014. 1. 1)
  2. 관리책임자 - 관련 연구부장 위임자(조교수 이상) (개정 2012. 7.22)
  3. 사용관리 1차 책임자 - 기자재 사용자
  4. 사용관리 2차 책임자 - 기자재 비치 연구실의 연구실장
- 제 4조 (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 및 사용관리 1, 2차 책임자의 임무) ① 총괄책임관은 모든 연구용기자재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고 각 관리책임자는 총괄책임관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용기자재의 선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연구용기자재 유지관리 및 대장 기록 보존관리
- ② 사용관리 1차 책임자는 구입기자재의 유지관리에 대한 1차 관리 책임을 진다.
- ③ 사용관리 2차 책임자는 소속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연구실 소속 기자재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유지관리 및 사용대장을 기록한다.
- 제 5조 (장부 등의 비치) 연구용기자재가 설치된 장소에 관리대장을 비치한다.
- 제 6조 (소모품 재료의 사용) 연구용기자재에 이용되는 소모품은 사용 연구자가 본 센터를 통해 수불한다.
- 제 7조 (연구용 기자재 대여 제한) 연구용기자재의 대여는 교내연구와 산학협동연구용으로 제한한다. 단, 산학협동업체의 요청 시 총괄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산학취업처장의 협조를 얻어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 제 8조 (연구용 기자재 표시) ① 연구용기자재는 잘 보이고 안전한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연구용기자재가 극히 작거나 다수가 모여 한 조를 이루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로 가능할 수 있다.
- 제 9조 (연구용기자재 유지 및 보수) ① 보안관리 : 연구용기자재가 설치된 장소의 청결은 연구자가 그 책임을 지고 연구 종료 시 환경을 깨끗이 정리, 청소를 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방화 및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그에 필요한 정례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② 일반관리
1. 연구용기자재는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마모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점검하여야 한다.
  2. 총괄책임관 및 관리책임자는 정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자재가 손상되었다고 판단되었을 시

에 사무국에 의뢰하여 총장의 재가를 득한 후 외부에 수리를 맡길 수 있다. (개정 2009. 2.13)

3. 연구용기자재는 연구가 종료되면 지체없이 원상태로 복원되어야 하며 손질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1. 관리책임자는 매 학기말 연구용기자재의 관리사항을 파악하여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며 총괄책임관은 이를 종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2. 관리책임자는 연구용기자재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을 총괄책임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용관리 2차 책임자는 연구용기자재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용관리 1차 책임자는 연구용기자재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을 사용관리 2차 책임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 연구용기자재의 장기사용으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총장의 재가를 득한 후 물품관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제10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